

# 2019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9년 4월 8일(월요일) 14:00 ~ 14:5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선출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김선희, 최백렬, 나창운, 이동호, 이인재, 오한모, 김용우, 이문선, 박지석, 이태풍, 이홍래 위원
- 불참자 : 유희철, 조재영 위원
- 상정안건
  - 위원장 선출
  -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9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 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거하여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당연직 중에서 부총장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위 원 : 김선희 부총장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나창운)

위원들 : 재청합니다.

위원들 : (전원) 동의합니다.

간 사 :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부총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  
(김강욱)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일반직위원 분들 중에서 선출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출이 되시면, 바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창운 위원님 추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간사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김선희 위원님을 오늘 재정위원회 임(김강욱) 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예

간사 :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김선희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김강욱)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있고 전에 뵙었던 분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니다. 교학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오신 위원님들과 보직교수님들께 잠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양규혁 교수님부터 잠깐 일어서서 소속하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일반직)

임시위원장 : 보직교수님들도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들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당연직)

임시위원장 : ~~윤기철~~ 학생처장과 조재영 산단본부장님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김선희) 위원님들 바쁜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14분 중에 12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

(김선희) 항에 따라서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양규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나창운)

위원들 :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 또 다른 분 추천 있으십니까?

(김선희)

위원들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없으십니까?

(김선희)

위원들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추천과 제청으로 우리 양규혁 위원님(김선희)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다음 진행은 이제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잘한 시간이 있으면 저도 처음 위촉받아서 와서 이 재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1년에 어느 정도 스케줄이 되는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처음 오신 거죠? 그런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그러면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강욱)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근거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위원이 우리 대학은 15명인데 이것은 재정위원회 위원은 11명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개최단위 횟수에 대해서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안 편성과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용 등의 등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추가 개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작년 같은 경우에 대체 몇 번 정도 회의가 있었나요?

(양규혁)

간사 :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강욱)

위원장 : 저도 지금 처음 위촉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처음 이신 것 같아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에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노 기획예산부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이상노) 대하여 설명합니다.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연구 학생지도비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

(양규혁) 는거라 외부에서 오신 동창회장님이나 학생들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 은데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를 교육부에 안을 넣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  
(이문선) 게 되면 제가 재정위원회를 처음 참석은 하지만 재정위원회의 기능이 먼지 잘 모  
르겠거든요. 재정위원회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재정위원회에서 좀 적절치 못한 구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이 마련되면 그 안이 교육부에 가기 전에 재정위원회를 거쳐  
서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의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부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저희가 시기적으로 축박한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첫 번째는 학생지도영  
(이상노) 역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하는 안건 의견수렴을 하고 두 번째는 교수회하고 또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조절한 시간상으로 많이 걸려서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만 단독  
으로 올려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부터는 좀 일찍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제 소개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과 소개만 했습니다만 제가 교수  
(이인재) 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가 덜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부처장  
님께서 여기 저기 관련된 구성원들과 열심히 협의를 하셔서 하기는 했지만 구성  
원들의 바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충  
분하게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논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위 원 : 이번에는 좀 저희가 늦게 시작도 했을 뿐더러 저희가 말은데 물리적으로 시한이  
(나창운) 부족해서 의견수렴 ~~절차~~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끝낸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절차상에 좀 불가피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고요. 다른 말씀 없으십니  
(양규희) 까?

위 원 : 대학노조 대표로 온 사무국장 이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지금안에 대  
(이문선) 해서는 아까 이인재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건이  
있지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공감은 하겠는데요. 저희 대학노조 쪽에서 지금  
대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년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반영이 되  
지 않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회계적 전체가 한 330명 정도 되요. 그런데 이  
비용을 받고 있는 분은 69명입니다. 21%정도 되는데 문제인 정부정권 들어서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저희가 그걸 다 대학회계적으로 무기계약직, 계약직,  
미화원 분들 올해는 경비원까지 다 받고 있는데 그 받았다는 거 빼고는 예산상  
으로는 정규직화 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거를 보면 지금안에 1페이지 보면 지금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회계직원하  
고 가로열고 협약서에 따름하고 되었거든요. 이 협약서는 저희가 항상 임금협약  
서에 학생지도비를 들다보니까 임금협약서를 뜻하는 것 같진 해요.

위원 : 저희가 2019년 임금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이문선) 2018년 기준의 협약서로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19  
년 협약서에 현재 받고 있는 기준이 아닌 더 다른걸 추가해서 협약이 이루어졌  
을 때 그때 이걸 추가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기에 조금 듣고 싶고요. 저희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이 조항이 많아요. 13조까지밖에 안되는데 다른 교직원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12조에 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교원이  
나 일반직은 없는데 대학회계직원만을 대상으로 넣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몇 년간 저희가 항상 재정위원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건 전작에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말해봤자 이미 정해진 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올해에 제가 이야기한 게 내년되면 또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경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만 보지마시고 여기에도 분명히 협약서에 따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협약이 바뀔 수 있다면 이 기준안도 어느 정도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저희 대학회계직원분들 새로 정규직 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상실감이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화예산부처장 : 면접 협약서에 따름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 편성이 작년 결산기준으로 예산을 편  
(이상노) 성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의 협약서를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학회계직 고려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서 전체 조건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교연비 금액이 총액이 지금 전북대학교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양규희) 서 추가로 더 지급한다든가 할 때 그게 학교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 총액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교연비 지급했던 그 금액을 교육부  
(나창운) 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난해에서 1%도 올리지 못하는 이야기죠?  
(양규희)

기화예산부처장 : 새로운 신규 직원 같은 경우 공무원, 새로 오신 교수님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총액  
(이상노)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천만원 증액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 참고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  
(양규희)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죠.

위원 : 2019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사항 페이지에서 2019년 계획  
(오한모) 에 과거 지도제자 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 개제 시 비용 환수하게 되어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오늘 교수회에서 이메일을 한통 받았는데요.

비용 환수금을 해서 지도학생 석박사 학위 논문 요약 후 제목만 변경하여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비용 환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과거 지도제자 논문 공동저자로 이면은 자연계열 교수들은 제자의 학위논문 지도시 계획과 실험 및 조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저자로 계제하는데 이러한 비용 환수 기준에 포함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 협약을 맺던 이렇게 하신다면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부처장: 저희도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나온 (이상노) 것은 교육부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는 다시 또 대학으로 내려와서 이게 아마도 작년도 감사 결과에 점심시간 지도 실적 불인정 이런식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아니라 따라야 될 면률이 되어서 이거 따르지 않으면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징계사유가 됩니다.

위원 : 교수가 아닌 외부인들이 하는 오해가 우리 학생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 (이인재) 에 학생들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 교수가 학생의 일을 모두 뺏어갔다는 등 이런 오해들을 흔히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감사원들께서 우리 특성을 좀 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관련 보직자 분들이나 기회있을때마다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기회가 있다면 어필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계획 변경사항 마지막페이지에 논문제제 (오한모) 경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A&HCI, SSCI 자연계열, SCI, SCIE 그 부분에서 단가가 500만원에서 700만원 ~ 100만원으로 된거죠? 지금기준이 바뀐 게 Impact Factor순위에 따라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순수 IFTS입니까? 아니면 자기인용지수를 빼고 계산한 겁니까?

위원 : 그것은 자기인용 포함해서 IFTS지수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단에서 (나창운) 최근에 연구논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 근데 포함해서 하시면요. 보통은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인용을 (오한모) 많이 하는데요.

위원 : 어쨌든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 (나창운) 으로 IF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 얼마나 잡을 줍니까? IF지수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택시면 700만원 미니면 (오한모)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차등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예산부처장: 여기 단가 기준은 산학연구본부의 연구지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금 (이상노) 액만 배정하면 거기서 세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이 교연비가 교수들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대표해서 발언이 많습니다. 이해해  
(이인재) 주시고요. 여기서는 학술트랙에서 변한 게 없는데 학술트랙에 지금 계획서를 내<sup>1</sup>고 중간 보고서를 1년을 마치고 다시 또 계획서를 내고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 래서 2년 동안에만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학술트랙은 알다시피 논문을 하나 내게 되어있고요. 논문을 하나 냈으로써 일종의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논문을 다른 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학술트랙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보고서를 내는 양도 많을뿐더러 횟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진이나 연구지원단체에 연구비를 받아서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종보고가 우리가 연구제안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10page 내외입니다. 10page 이상은 보지도 않거든요. 결과보고서는 특별하게 형식은 없고요. 물론 항목은 있지만 페이지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제안은 물론 다음부터 적용되겠지만 1차년도에 계획서, 2차년도에 중간보고서, 3차년도에 결과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요약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좀 공평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교연비 총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교연비가 학교마다 지금액수가 다르거든요. 많은 교수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하기를 등록금 수입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냐 학교마다 등록금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은 됩니다만, <sup>공식적으로</sup> 왜 다르고 우리는 왜 이 액수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 원 :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상  
(나창운) 노부처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트랙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에 2년 계약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가능하면 페이퍼 워이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 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현재 올해 개정된 것은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일들이 좀 간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 여러 가지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내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교연비 전체의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9개 거점국립대학 중간쯤 되는데, 그게 아마 결정될 당시 그리고 여러 가지 등록금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 기성회가 이쪽 대학회계로 편입되면서 기성회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대학은 결정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학의 교수 대비 직원의 숫자가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상노부처장님의 설명하겠습니다.

기화예산부처장 :	이 금액은 처음에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편입되면서 그 때 당시 학교 규모랄지 수
(이상노)	업료 등을 고려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교수님께서 1700만원 받는 형편이었고, 부교수님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조교수님이 한 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올려가지고 1700만원 수준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번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천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계속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서 첫 해에 했던 금액들이 1~2년 하고 그 금액이 계속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때 부교수님이나 조교수님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받는 셈이 되는데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 하락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교연비 부분은 교수들은 굉장히 잡무를 많게
(양규혁)	하는 비용이어가지고 잡무를 좀 많이 줄여주는 방향으로 많이 개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편이 있어서 안이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더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위원장 :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대학은 전체적으로 논문을 하나 제출을 하
(오한모)	면 전체가 끝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대는 연구 트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논문 하나만 쓰면 학생 지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또 경북대, 부산대들도 다른 실적보고서하고 논문 쓰면 다 해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간소하게 가려고 하면 논문 하나 제출하면 규정이 이렇게 13개나 필요없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	논문을 못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로만 하면 외부에서도 굉장히
(나창운)	불만이 있습니다.
기화예산부처장 :	저희가 <del>복잡해지는게</del> 그런 분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채우기 위해서 여러 선택지를 넣
(이상노)	어서 상당히 길어지는데 단순하게 가자면 그렇게 앞으로는 다 가야 됩니다. 거점국립대에서 우리 학교만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
(양규혁)	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분들께서는 거수하여
(양규혁)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9명 찬성
위원장 :	반대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들 :	2명 반대
위원장 :	찬성 9표, 반대 2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규혁)	

위원장 : 다음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제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양규혁) 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제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박성일) 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재무과장 : 저번에 저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각 부처에 (박성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각각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중기적인 계획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부처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서 처장급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규혁)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이 안은 본부 직책에 따라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것

(양규혁)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위원이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전원 찬성)

위원장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11분 전원 찬성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이 (양규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순서는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3인을 선출하는 순서입니다. 본 회의를

(양규혁)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제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한상숙, 박미순,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들 : 이인재, 김용우,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인재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박지석 위원님 이렇게 3분이 간(間)서

(양규혁) 명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회의가 끝나기 전에 혹시 다른 기타 말씀해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양규혁)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양규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욱) 습니다.

작성일 : 2019. 4. 15.(월)

위원장 : 양규혁 (인)

간사 : 김강욱 (인)

기록자 : 김선웅 (인)

2018/4

| |